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4월 1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32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원 및 계약직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정원) 관련 [별표1] <공무원근로자 정원표>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- 합계 '98' 을 '99' 로 하고 일반직 '72' 를 '73' 으로 한다.

제59조(가족수당) 관련 [별표2] 공무원근로자 수당 및 복리후생비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지 급 기 준	비 고
가족수당	○ 배우자: 월 40,000원 ○ 첫째 자녀: 월 50,000원 ○ 둘째 자녀: 월 80,000원 ○ 셋째 이후 자녀 1명당: 월 120,000원 ○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: 월 20,000원	직원 부양가족 4인 이내이나,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